
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교육부장관은”을 “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”으로 하고, “수립하여야한다”를 “각각 수립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교육부장관이”를 “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·평가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제5항(중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제6항(중전의 제4항)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교육부장관은”을 “교육부장관 및 교육부

감은”으로 하고, “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”를 “각각 교육부 및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”로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지원)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“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”이란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교육청 또는 법 제9조의제2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역·번역 지원
2. 제1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 및 통역·번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

제7조의3(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9조의제2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교육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때는 지역별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,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수요, 학생 수 및 언어별 분포,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확보 여건 및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.

② 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에 관한 업무
2.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특수외국어 통역·번역 지원 업무
3. 특수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·협력

③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전문인력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때에는 해당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, 관련 분야의 학위 취득 또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 및 교육·통역·번역 또는 학생 지원 관련 업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교육센터별 특수외국어 교육 및 지원 수요, 지원이 필요한 특수외국어의 종류, 학생 수 및 전문인력의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배치·운용해야 한다.

⑤ 교육감은 전문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·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전문인력의 배치·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 행계획의 수립 등) ① <u>교육부 장관은</u>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 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 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 여야 한다.	제4조(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 행계획의 수립 등) ① <u>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</u> <u>각</u> -----.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(현행 제2항과 같음)
1.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 한 주요 사업	1. · 2. (현행과 같음)
2.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	
3.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<u>교육부장관이</u>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	3. ----- - <u>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</u> -- -----
<u><신 설></u>	③ <u>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 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 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<신 설>

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·평가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.

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-----
-----각각
교육부 및 해당 시·도 교육청
의-----
---.

<신 설>

제7조의2(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지원)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“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”이란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교육청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역·번역 지원
2. 제1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 및 통역·번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

<신 설>

제7조의3(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때에는 지역별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,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수요, 학생 수 및 언

<신 설>

<신 설>

어별 분포, 특수외국어 전문인
력의 확보 여건 및 법 제8조에
따른 전문교육기관 등 관계 기
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
여야 한다.

② 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
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생의 특수외국어교육 및
학습 지원에 관한 업무
2.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
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특수외
국어 통역·번역 지원 업무
3. 특수외국어 교육과 관련된
교원의 교육활동 지원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
무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기관
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·협력

③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2
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전문인
력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인력”
이라 한다)을 배치할 때에는
해당 특수외국어를 관한 전문
지식과 구사 능력, 관련 분야
의 학위 취득 또는 교육과정

이수 여부, 교육·통역·번역
또는 학생 지원 관련 업무경력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
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인력
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
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전문
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<신 설>

④ 교육감은 교육센터별 특수
외국어 교육 및 지원 수요, 지
원이 필요한 특수외국어의 종
류, 학생 수 및 전문인력의 수
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
력을 배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⑤ 교육감은 전문인력의 직무능
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
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·연
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
육센터의 원활한 설치·운영
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
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
에서 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 및
전문인력의 배치·운용 등에
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u>제8조(권한의 위임) 교육부장관</u> <u>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</u> <u>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</u> <u>육원장에게 위임한다.</u> <u>1. ~ 5. (생략)</u> <u><신설></u>	<u>제8조(권한의 위임) 교육부장관</u> <u>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</u> <u>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</u> <u>육원장에게 위임한다.</u> <u>1. ~ 5. (현행과 같음)</u> <u>6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</u> <u>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</u> <u>교육부장관의 권한</u>
--	--